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09.17.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  
나. 회부일자 : 2010년 9월 6일  
다. 상정일자 :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0년 9월 17일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이재덕

### 가. 개정이유

동 조례안은 민원인의 다양한 납부 편의성을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을 추가하여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# 나. 주요개정내용

- (1) 안 제4조에서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공개된 정보로서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인 “별표에 열거한 공부, 도면, 대장 등 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 한다”라는

##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

- (2) 안 제4조1에서는 2010년 2월 8일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, 현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- (3) 안 제6조제1항제2목에 있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3목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제4목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제5목으로 개별적인 목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6목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7목, 「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결정.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제8목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9목으로 신설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개정조례안은 2010. 4. 22자로 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준칙안」 이 시달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카드결제 도입, 수수료 면제 범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8. 기타사항 : 없음